

채소류 표준규격화 촉진에 관한 연구

권원달

(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A Study on Standard Grading of Vegetables in Korea,

Won-Dal Kwon

Dept. of Agricultural Economic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ongJu, Korea.

적 요

채소류의 표준규격화는 그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농가단계에서 보급이 확산되고 있다. 채소류 농업이 상업농화 되면서 표준규격화도 점차 정착되고 있으나 관행거래방식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

채소류의 표준규격화는 생산자, 소비자, 상인에게 공통적인 경제적 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농가나 유통과정에서 적극적인 보급과 단계적 시책개발이 필요하다. 표준규격화는 유통과정에서 유통능률을 높이고 공정거래를 정착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급이 절실하다.

현재 채소류의 표준규격화는 열매채소류는 과일과 비슷하게 보급되고 있으나 잎채소류는 상품적 특성과 생산 및 출하방식이 영세하기 때문에 일부 선도농가나 농가조직을 제외하면 부진한 실정이다. 유통 단계별로는 농가단계가 부진하나 도매단계는 개선되고 있다.

채소류의 표준규격화는 선별, 표준 등급화, 포장방법이 부진하나 일부 작목반, 농협, 선도농가는 상당한 정도로 발전되고 있으며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채소류의 표준규격화는 규격화의 한계 설정, 규격화의 여건 미흡, 생산규모의 영세성과 출하 단위의 영세성, 산지유통시설의 미흡과 노동력 부족, 표준규격화에 대한 인식부족 등의 제문제가 있다.

채소류의 표준규격화는 정부규격이 제정 보급되고 있으나 시행상에 있어서 현실성이 적고 시책개발도 미흡하다. 보다 적극적으로 채소류 표준규격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에 의한 표준규격화의 여건 조성, 공동판매방식의 적극 추진, 생산자 조직의 활성화, 포장센터의 기능 정착, 현실성 있는 표준규격화의 제정, 도매시장에서 적극 추진, 그리고 제도적 개선과 교육홍보기능 강화와 농민들의 상품성 제고에 대한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I. 서 론

채소류는 품목이 많고 다양하며 재배기술과 유통방법이 다

양하다. 채소류는 상품적 특성으로 인하여 품목, 재배기술,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수확, 저장, 포장, 수송, 상하차 등 유통과정에도 취급방법, 생리적 현상으로 부패, 변질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그동안 채소류 생산도 점차 상업농 형태로 정착되면서 주산지화, 전문화 되고 품질도 개선되고 상품성도 높아지고 있다. 유통과정에서도 도매시장기능이 점차 활성화되고 공영도매시장운영이 정착되면서 능률높은 운영 정상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농가단계에서 상품성 높은 채소류 생산과 출하가 필요하게 되었다.

채소류가 갖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유통능률을 높이고 거래를 신속 정확하게 하며 유통경비를 절감하고 가격형성을 능률화하고 상품성을 높여 농가수취가격을 높이고 공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채소류의 등급별 표준규격화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채소류의 표준규격화는 행정 필요에 의한 표준거래단위 제정에 그쳐 있으며 등급규격과 포장규격은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농가단계나 도매시장 거래 과정에서 부진한 실정이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본 연구는 주요 채소류의 등급별 표준규격화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외국제도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등급별 표준규격화 기준을 설정하여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능률을 높일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농가단계와 도매시장단계에서 채택할 수 있는 실천가능한 방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조사에서는 무, 배추, 양배추, 당근, 시금치, 상추 등 엽채류와 고추, 오이, 호박, 가지, 토마토, 딸기 등 과채류를 포함하여 2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농가, 도매단계를 현지조사하였으며 기존자료도 활용하였다.

Ⅱ. 본 론

1. 표준규격화의 경제적 효과

표준규격화란 표준등급화된 형태를 일정 표준거래단위로 포장화된 형태를 말한다. 채소류는 품질이 상이하고 수요가 이질적이며 공급측에서도 품질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동질적으로 분류하여 소비자 기호에 적합시키고 가격형성과 경영능률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표준규격화가 채택될 때의 잠재적 이점 또는 효과를 집약하면 시장활동의 비용을 제거하여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고 가격형성을 능률적으로 개선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격형성을 정확하고 능률화 하는데 기여한다. 등급별 시장가격정보를 보도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가 시장가격인용, 종류별 등급별 가격수준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통한 가격형성과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시장에서 구매자에 의한 직접 검사가 필요하지 않고 시장정보를 판단하는데 많은 시간 및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둘째, 표준규격화는 경영관리능률을 제고하는 점이다. 표준규격제도는 마케팅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들면, 각 거래마다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에 대한 흥정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농산물의 매매가 표본이나 기술내용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관념매매가 이룩될 수 있어 마케팅기능의 전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 광고 및 판매촉진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등급화는 가격경쟁을 증가시켜 기술변화나 유통비용 절감활동을 할 수 있으며 운반비를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고, 농민들로 하여금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게 하는 계기를 주며 공동출하를 가능하게 한다.

셋째, 표준규격화에 따르는 다른 중요성은 판매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출하기에 차별가격을 수취할 수 있어 농가의 총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줄일 수 있다.

청과물의 표준규격화는 포장규격화와 등급화로 분리되며 포장규격화는 포장단량별 크기규격과 외부표시사항으로 표시된다. 등급화는 품위등급별 선별기준과 크기별 선별기준으로 구분되며 전체가 조화를 이룰 때 표준규격화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산물출하는 품질과 용량의 규격 파악이 어렵고 하역작업과 수송시 품질손상이 많고 도매단계에서 쓰레기 발생량이 많고 품질이 불균일하여 가격형성이 어렵고 공정거래가 제약되며 결국 도매나 소매단계에서 재선별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채소류의 표준규격화가 철저히 실시되면 수집, 도매, 소매단계 특히 수집과 도매단계에서 경제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가격형성, 경영관리, 판매촉진을 촉진시켜 생산자, 상인, 소비자에게 경제적 효과를 높이게 된다.

2. 표준규격화의 실태

가. 표준규격화의 제정 경위

농산물 표준규격화사업은 역사가 오래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나라 농업이 상품생산이 아닌 자급형태이었기 때문이다. 60년대까지는 주로 곡류 중심의 농산물검사 품목 이외에는 산물형태의 관행거래가 이루어졌으며, 61년 5월 계량법 제정으로 일부 농산물의 법정계량단위가 의무화 되었다. 70년대 들어서 과실류 등 일부 상품의 포장기준 없이 상자단위로 거래되었으며 상품성을 높이는 목적이 아니라 수송편의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농검이나 농협에서 거래단위 통일 및 규격화를 제정하려 시도했다.

80년대에 들어서서 표준거래단위를 제정하여 점차 실시단계에 들어갔다. 농협은 자체적으로 규격화사업을 실시하여 80, 82년 2차에 걸쳐 25개 품목에 대해 표준출하규격을 제정 추진하였으나 83년 12월 30일 정부에 의해 농수산물 37개 품목에 대해 표준거래단위를 제정하여 도매단계에 실시하였다.

표준출하규격 제정은 80년대 후반 정부의 표준거래단위 표준화 계획에 맞추어 수정 보완하여 86, 87, 88년에 주요 청과류 23개 품목에 대해 등급규격으로서 선별기준과 품위기준을, 포장규격으로서 포장기준 및 표시기준을 제정하였으며 89년 11월 27일 포도 등 23개 품목의 표준출하규격을 제정하고 90년에 추가 개발하여 보완하였다.

표준출하규격화의 체계적 관리는 지금까지 생산자 단체에서 실시하던 규격을 정부규격으로 수용한 때부터이다. 92년 4월 농림수산부 고시 농산물규격화 및 품질인증에 관한 운영요강을 제정하여 표준출하 규격관리를 농협에서 농산물검사소로 이관하고 기 제정규격은 크기 중심에서 품질위주로 일

부 개정하였다. 또한 농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9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어 표준출하규격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법령화하였으며 96년부터 표준출하규격이 제정된 전품목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표준규격화 추진단계를 보면 1단계는 사과, 배, 단감 등의 품목에 대해 94년 하반기부터 공영도매시장에서 추진되었으며 2단계는 과실류 및 과채류 전품목, 마늘, 양파 등에 대해 95년 3월부터 공영도매시장과 법정도매시장에서, 3단계는 표준출하규격 제정 전품목에 대해 96년 1월부터 법정도매시장과 공영도매시장에서 추진되었다.

나. 표준거래단위 보급 실태

농산물 표준거래단위는 표준규격화의 기초단계로서 주로 도매단계에서 거래단위와 거래단량, 포장재를 제정하여 보급하고 있다.

정부가 제정 추진중인 표준거래단위는 곡류 9, 과실류 13, 채소류 33, 서류 및 기타 4품목이며 청과물은 주로 도매단계에 적용하고 있다.

거래단위는 품목에 따라 다르나 상자, 포대단위로 실시하고 있으며 사용되는 포장재는 골판지, 합성수지, PP대, 그물망 등이 사용되고 있다.

거래단량은 5, 10, 15, 20kg 단위로 되어 있으며 소규모 단량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표준거래단위 보급은 점차 정착되고 있으며 사과, 배, 양파 등 28개 품목은 70% 이상이 정착된 품목이며 포도, 당근

표 1. 주요 청과물의 표준출하규격 제정 품목

구 분	품 목
과실류	사과, 배, 단감, 감(홍시), 꽃감, 뽕은감, 감귤, 복숭아, 자두, 포도, 밤, 파인애플, 참다래, 유자, 건대추, 생대추, 매실, 양앵두(버찌), 살구, 간장, 호두, 은행, 앵두, 무화과 (24품목)
과채류	건고추, 풋고추, 파리고추, 물고추(홍고추), 오이, 호박(청과), 가지, 토마토, 방울토마토, 참외, 딸기, 수박, 조롱수박, 메론, 피망, 풋옥수수, 완두콩, 풋콩 (18품목)
기 타 채소류	양파, 마늘, 마늘즙, 파, 무, 배추(결구), 얼갈이배추, 양배추, 당근, 시금치, 상추, 깻잎, 부추, 마, 생강, 연근, 우영, 숙갓, 고구마순, 미나리, 셀러 리, 적양배추(루비볼), 녹색꽃양배추(브로콜리), 케일, 꽃양배추(칼라플라워), 향미나리(파슬리), 더덕, 건취나물 (28품목)
서 류	감자, 고구마 (2품목)
버섯류	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건표고, 생표고 (4품목)
화훼류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5품목)
계	총 6부류의 81개 품목

자료: 국립농산물검사소, 「농산물 품질관리연보」, 1995

등의 7개 품목은 30~70%, 배추, 파, 시금치 등 20개 품목은 부진한 품목이다.

다. 등급별 표준규격화 보급 실태

1) 유통단계별 실태

① 농가단계

농가단계에서 표준규격화실태는 지역과 품목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일반적으로 등급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채소류의 표준출하규격 실태는 과실류에 비해 일반적으로 낮으나 열매채소류는 상당히 발전되고 있다. 규격포장은 평균적으로 딸기 70%, 토마토와 양파가 70%, 가지 60%, 오이 65%, 풋고추 58% 등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다.

선별실태는 농가 나름대로 실시하고 있으나 배추 90%, 풋고추 90%, 오이 90%, 무 90%로 상당히 발전되고 있으나 객관적이지 않고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등급 구분은 일반적으로 3등급으로 구분하는 농가가 가장

많으며 등급 설정기준은 크기와 품위기준을 병용하고 있으나 크기기준이 59%, 품위기준이 41%로 삼고 있는데 농가 나름대로 설정하고 있다. 품위등급기준은 1순위는 형상, 품질, 선택, 병해충 순으로, 2순위는 품질, 선택, 형상 순으로 3순위는 품질, 형상, 선택, 병충해 순으로 되어 있어 형상, 품질, 선도를 중시하고 있다. 등급구분 및 명칭은 특, 상, 중, 하의 4등급이나 상, 중, 하의 3등급으로 구분되는 경우도 많다.

② 도매단계

도매단계인 도매시장은 청과물의 표준규격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단계이며 비교적 개선되고 있다. 채소류의 표준규격화는 열매채소류는 비교적 보급되고 있으나 엽채류는 부진하며 파, 양파, 무는 비교적 개선되고 있다. 선별실태는 배추, 무, 파, 가지, 당근 등이 개선되고 있다.

등급화는 양파, 당근, 오이, 파, 마늘 순으로 비교적 개선되고 있으나 객관적 기준은 채택되지 않고 있다. 등급화 방법도 공동선별보다 개인선별이 많고 등급구분은 3등급이 가장

표 2. 주요 채소류의 등급기준과 등급구분

품 목	등급기준	등급구분			
		2L	L	M	S
배 추	포기당중량(kg)	4 이상	4-3	3-2	2이하
	포기당직경(cm)	20 이상	20-15	15-10	10이하
무	개당중량(kg)				
	대장계	2.0 이상	2.0-1.5	1.5-1.0	1.0이하
	궁중계	1.5 이상	1.5-1.0	1.0-0.5	0.5이하
양배추	재래종	1.0 이상	1.0-0.7	0.7-0.5	0.5이하
	포기당 중량(kg)	3.0 이상	3.0-2.5	2.5-1.5	1.5이하
	포기당 직경(cm)	15 이상	15-13	13-10	10이하
양 파	평구형 중량(g)	250 이상	250-200	200-100	100이하
	횡경(cm)	9 이상	9-7	7-5	5이하
	편평형 중량(g)	250-200	250-200	200-100	100이하
	횡경(cm)	10 이상	10-8	8-6	6이하
풋고추	개당 중량(g)	25 이상	25-20	20-15	15이하
	오 이	장과형 중량(g)	300 이상	300-25	250-200
길이(cm)		35 이상	35-30	30-25	25이하
단과형 중량(g)		170 이상	170-150	150-130	130이하
호 박	길이(cm)	25 이상	25-20	20-15	15이하
	장과형 중량(g)	350 이상	350-250	250-200	200이하
	길이(cm)	35 이상	35-20	20-15	15이하
	단과형 중량(g)	500 이상	500-400	400-300	300이하
딸 기	길이(cm)	30 이상	30-25	25-20	20이하
	개당 중량(g)	25 이상	25-20	20-15	15이하

자료 : 농협중앙회, 국립농산물검사소.

많다.

등급설정기준은 크기와 품위기준을 병행하고 있으며 크기 기준을 중요시하고 있다. 크기 선별기준 순위는 선도, 형상, 품질 순위이며 품위등급기준은 선도, 형상, 품질 순위이다

채소류의 등급구분은 4등급이 일반적이고 3등급과 2등급은 품목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크기는 길이와 무게를 기준하고 있다.

채소류의 품위기준도 나름대로 채택되고 있으며 그 기준은 날개, 크기의 고른 정도, 형상, 색택, 생육 정도, 당도, 신선도, 육질, 중결점과, 경결정과 등에 의해 결정하고 있다.

주요 채소류의 등급기준과 등급구분을 보면 품목에 따라 차이가 크며 품종에 따라서도 다르다. 따라서 객관적 기준이 어렵기 때문에 생산자나 거래자의 주관에 따르고 있으며 소비자호는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2) 품목별 실태

채소류의 관행거래단위는 접, 상자, 포기, 묶음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지역, 또는 농가단위에서 점차 전국단위로 통일되어가고 있다. 거래규격은 열매채소류는 비교적 통일되고 있으나 엽채류는 부진한 실정이다. 표준출하가격이 농검을 통해 제정 보급되고 있으나 출하단계에서 생산자의 인식이 부족하며 객관적 기준이 없다.

등급기준은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상, 중, 하의 3단계로 구분되고 있으며 4단계 또는 2단계로도 통일되고 있으며 기준도 크기, 중량, 색택, 선도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등급기준은 크기선별기준에 따르고 있으나 색택, 당도 등 품위 선별기준도 중요시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형상, 즉 채소류의 모양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색깔이 있는 채소류는 색택 즉, 빛깔을 중요시 하고 있으며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위치, 즉 약간 높은 지대에서 재배를 주로하고 있다.

라. 포장규격화 실태

포장은 채소류의 유통과정에서 상품을 보호하고 판매를 촉진하며 유통능률을 높이는 것이다. 농산물 포장은 날포장 즉 단위포장, 소포장, 대포장 등 유통단계와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도매단계는 대포장이, 소매단계는 소포장으로 거래되고 있다.

포장형태나 포장방법도 크게 변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산지에 포장시설이 빈약하여 산물출하가 많았고 소비자에서 중도매인, 위탁도매상, 소매상들이 자체적으로 소비자 요구에

맞게 포장하였다. 그러나 포장작업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작업인부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산지에서 포장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정부투자에 의한 산지포장시설이 늘어나면서 포장방법도 전문화되고 있다. 최근 산지 포장센터가 크게 확충되면서 채소류의 포장개선도 확산되고 있다.

채소류의 포장실태를 보면 과채류는 크게 개선되고 있다. 과채류 중에서도 수박, 참외는 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이르는 동안 아직도 날개로 거래되고 있다. 부분적으로 복수박이나 조기출하되는 참외는 포장되는 경우도 있다. 수박은 산지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날개로 거래되고 있으며 관행적인 거래방법이 일반적이다.

딸기, 토마토, 오이, 호박, 풋고추, 가지류 등 열매채소류는 산지에서 선별되어 포장출하되고 있다. 특히 시설채소가 집중되고 있는 주산단지에서는 포장센터나 작목반, 협동출하반,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선별, 표준등급화되어 포장출하되고 있다.

배추, 양배추, 무 등은 산지에서 수확과 동시에 나름대로 선별하여 차떼기로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도매시장에서 다시 다듬기작업과 재포장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엽채류 중에서도 파는 밭에서 수확하여 묶음단위로 운반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으나 최근 묶음띠가 개발되어 정돈되어 유통되고 있다. 주요 채소류의 포장과 포장내용을 보면 품목에 따라 다양하다. 수박, 참외는 날개로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부착하여 출하되고 있으며 딸기는 플라스틱 용기로 소포장 후 박스로 포장하여 출하되고 있다. 오이, 호박, 가지는 PE필름으로 소포장되어 있으며 밭에서 포장작업을 직접하고 있다.

엽채류 중 배추, 상치, 시금치, 파, 양채류는 밭에서 정선 포장되거나 밭에서 대포장하거나 소포장은 포장센터에서 하고 있다.

채소류의 포장재료는 품목별로 골판지, 목상자, 그물망, PE, PP포대, 스티로폼, 마닐라 판지 등을 이용하고 있으나 재질이 다양하고 규격이 통일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채소류의 포장은 포장재가 다양하지 않고 포장재료가 하중에 약하며 겉포장 치수가 다양하여 표준규격화되지 않고 있으며 포장재 강도가 약하다.

따라서 포장재의 다양성 있는 개발과 강도 높은 개발, 포장재의 규격화, 소포장단위의 다양한 제정이 요구된다.

참고로 주요국의 채소류 포장재료를 보면 다양하다. 미국

표 3. 주요 품목의 유통단계별 포장등급화 실태

구분	농 가	산지농협	수집상(저장업)	도매상	소매상, 기타
고 추	마대에 80~105 근(100근기준)포장, 근(600g)단위거래	선별후 3kg(5근) 단위로 포장후 직판장으로 출하	100근씩 재포장	100근씩 재포장	근당 판매, 배화 점, 직판장, 대형 슈퍼에서3kg 비닐포장으로판매
마 늘	난지형 풋마늘 : 50개 묶음단위, 난지형 건조마늘:그물망(18~20kg) 단위 한지형 : 50개, 100개 묶음 접단위	30kg 골판지 또는 접단위 묶음으로 판매	20kg 그물망 저장, 18kg 또는 27kg씩 플라스틱 또는 목상자 저장	성출하시10kg, 20kg 그물망거래, 풋마늘·한지형은 50개 또는100개 씩단·접 거래	50개, 100개 묶음 접단위 판매 또는 500kg, 1kg 그물망 판매
양 과	20kg 그물망 포장판매	20kg	20kg 그물망 단위 50%, 5, 8, 10, 15kg 그물망 단위 판매	2, 3, 5, 8, 9, 10, 15, 20kg그물망거래	단, 날개판매
대 과	주로 포전판매	10kg골판지 상자 출하	10kg짚묶음 또는 P, E대에 담아 상자, 소비지 1kg단량 결속판매	차량 또는 단단위판매	날개단위 판매
수 박	노지 : 날개판매 시설 : 1~3개들이 골판지 유통			3개들이 상자	날개단위 판매
참 외	15kg단위 골판지 포장				금액단위 판매
오 이	노지:PE대를 이용한 접단위(100개)출하 시설 : 20kg 골판지, 일부 10, 15kg 골판지				금액단위 판매
토마토	15kg단위 골판지 포장				kg, 란(4kg)당판매
딸 기	1kg 스티로폴용기에 랩 쓰워 2kg고급골판지 포장 또는 8kg 스티로폴상자 포장				근(400kg), kg 단위 판매

자료 : 농산물 포장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1995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의 경우 대부분의 과채류는 강도높은 골판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엽채류는 목상자, 단묶음 날포장 등을 이용하고 있다.

일본은 과채류의 경우 골판지가 주로 사용되며 스티로폴, 랩, PE 등을 이용하고 있으나 골판지 이용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만은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대나무바구니, 강도높은 골판지, PE필름 날포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대나무 용기가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목상자, 골판지포장, 날포장, 플라스틱끈을 이용하고 있으며 목상자 이용이 많다. 채소류의 포장방식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자동기계를 이용하거나 수동식기계로 래핑하거나 수작업으로 PE대를 포장하고 있다. 실제로 유통

단계별로 채소류의 포장등급화 실태를 보면 품목과 유통단계에 따라 다양하다.

채소류의 포장규격은 정부가 권장하는 표준출하규격보다 점차 작아지고 있다. 예컨대 오이의 경우 15kg 골판지 상자에 표준규격은 35.5 31 28(1)이지만 실제 포장규격은 48 24.5 22나 48.5 24 25, 또는 50 23 22 포장규격이 많다.

도매시장에서 거래단위를 보면 표준출하규격보다 가락동시장 출하규격이 다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거래단위의 세분화로 유통효율성이 떨어지고 공정거래를 정착시키는데 문제가 있다.

유통단계별로 표준규격화 실태를 보면 널리 알려진 품목과 명성이 높은 주산지 출하품은 유통단계에 관계없이 일정한

표 4. 표준포장규격과 실제거래규격

품 목	표준출하규격	가락동시장출하규격	포장재 종류
오 이	10, 15, 20kg	4, 8, 10, 15, 20kg	골판지, 목상자, PP포대
애호박	10, 15, 20kg	4, 5, 8, 10, 15kg	골판지, 목상자, PP포대
참 외	15, 20kg	15, 20kg	골판지상자
토마토	5, 15, 20kg	8, 15kg	골판지상자, 목상자

자료 : 국립농산물검사소.

포장규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표 5 참조) 그러나 유통단계에 따라 포장형태가 변형될 수 있는 품목과 성과가 높지 않는 품목들은 농가단계와 소매단계가 다르고 수집상이 개제하는 품목일수록 재포장 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채소류의 포장규격화와 동시에 상표와 브랜드의 기능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상표와 브랜드는 상품의 차별화와 상품의 식별 생산자 표시기능과 상품신뢰, 품질보증기능등 다양하기 때문에 거래과정에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고 있다.

농협이나 작목반을 통한 출하 채소류의 생산자 표시 유형은 생산자나 출하단체, 품질보증 표시로서 주소, 전화, 출하조직, 출하자를 표시하고 있는 상품이 늘어나고 있다. 상표등록도 늘어나고 있으며 품질보증표를 나름대로 표시하여 부착하고 있다.

마. 품목별 표준규격화의 특징

채소류의 표준규격화는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그 정도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채소류의 표준규격화는 상품적 특성 때문에 지연되고 있으나 열매채소류는 과실류와 비슷하게 확산되고 있다.

채소류의 출하방법도 정부가 제정 보급한 출하기준을 따르는 농가가 많고 특히 도매거래에서 그 필요성이 생산자에게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다소 이상적인 정부 출하규격으로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채소류의 관행거래표준도 농가나 지역단위에서 전국단위로 통일되어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열매채소류는 더욱 발전되고 있다. 포장상태도 골판지, 목상자, PE, 등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포장단위도 점차 소비자 기호에 맞게 소포장되고 있다. 최근 농촌노동력 부족에 따른 노임상승과 수퍼마켓 등 대량소매기관에서 소포장형태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체계

적이고 계획적인 포장센터 기능이 필요하게 되었다.

정부는 산지에 청과물 포장센터를 건설하면서 이러한 포장기능을 점차 충족시키고 있으며 물류센터가 개장되면서 포장규격화는 촉진되고 있다. 농가도 표준규격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얼굴있는 채소류를 생산 출하하려는 계획이 실천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정거래와 신속한 거래를 촉진시키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

3. 외국의 표준규격화 실제

가. 일 본

1) 표준규격화의 특징

일본의 채소 표준규격제도도 1970년부터 실시되었다. 일본의 채소류 표준규격은 품위, 대소, 중량, 포장기준에 따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규격실정에는 몇가지 원칙을 두고 있다.

① 품위등급설정에 있어서는 격차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

② 대소기준을 표시하는 단계구분도 가능한 한 적게 하고 있다.

③ 중량, 포장의 종류와 방법은 통일하고 있다.

④ 표준규격을 보급하는데는 일정 유예기간과 교육지도를 하고 있다.

⑤ 규격은 현조례로 제정하여 채택하고 있다.

2) 야채의 표준규격 설정 요령

규격은 출하단계의 품위, 대소, 중량 및 포장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품위기준은 품종고유의 형상, 선택, 결구상태, 부패, 변질, 병해, 충해, 상해, 선도, 외관 등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대소기준은 품종별로 1개의 크기 또는 중량을 기준으로 2L,

표 5. 주요 품목의 유통단계별 포장등급화 실태

구 분	농 가	산지농협	수집상 (저장업)	도매상	소매상, 기타
고 추	100근 기준 마대, 근단위 거래	선별후3kg포장 후 직판장출하	100근단위로 재포장	100근씩 kg당 비닐포장	근장판매,
마 늘	난지형 풋마늘:50묶음단위 난지형건마늘:그물망(18-20kg) 한지형: 50,100개	30kg골판지, 접단위 묶음	20kg그물망, 18kg 또는 27kg플라 스틱, 목상자 저장	10, 20kg그물망, 풋마늘·지형: 50, 100개씩	50개묶음, 100개 접단위, 500g 또는1kg그물망판매
양 파	20kg 그물망포장	20kg그물망	5, 8, 10, 15, 20kg 그물망판매	2, 3, 5, 8, 9, 10, 15, 20kg 그물망	2, 310kg그물망, 날개판매
대 파	주로 포전판매	10kg골판지 PE대판매	10kg짚묶음,	차량, 단단위	단 또는 날개
사 과	15kg 골판지, 18-23kg 목상자, 밭떼기, 정전판매			15kg 골판지	상자단위 및 날개판매
배	15kg 골판지상자			15kg 골판지, 10kg 골판지	상자단위 및 날개판매
단 감	5개소포장 후 15kg골판지상자 15kg골판지상자		접단위입도선매매 및 15kg판매	15kg골판지상자	5개들이비닐 포장단위 판매
수 박	노지: 날개판매 시설: 1-3개 골판지			3개들이 골판지상자	날개판매
참 외	15kg 골판지상자				날개판매
오 이	노지: PE 대접단위 시설: 20kg골판지				개수단위 금액단위판매
토마토	15kg 골판지상자				kg, 관단위판매
딸 기	1kg스티로폼, 2kg종이상자, 8kg스티로폼상자				근(400g), kg단위판매

자료 : 김명환 외 3인, 「농산물 포장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5. 7

L, M, S 또는 3L, 2L, L, M, S로 구분된다.

중량기준은 1포 단위의 중량으로 표시되며 포장중량단위에 따라 분류한다.

포장기준은 포장용기와 골판지상자단위를 표시하며 재료의 재질, 하조방법, 표시사항 등을 명시한다.

나. 대 만

대만의 채소류표준화는 가격결정과 운송효율증가, 거래상의 가공정리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1975년부터 제정된 것이다.

1) 표준규격정책의 특징

대만의 채소류표준규격은 현실에 맞는 잠정규격에 의한 것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채소, 과실의 규격제정은 지방정부와 농협, 시장공사가 합동으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출하청과물의 규격위반품은 시장공사기준에 따라 재선별, 개포장을 실시하여 경매순서를 지연시키거나 상장거부 또는 시장에서 분급포장하고 비용을 징수한다.

간이선별은 농가단위로 실시하며 공동계통출하분은 농회사 합작사 직원이 순회하여 일차검사 및 지도를 하며 농회사 합작사의 집하장에서 재차 검수후 기준에 맞게 선별한다.

포장용기는 대나무상자, 목상자, 종이, 골판지상자 등이 혼용되고 있으며 프라스틱이나 스티로폼로 된 포장용기도 일부 슈퍼마켓에서 도입하고 있다.

포장용기에 출하자번호, 품명, 품종번호, 산지, 등급, 대소, 중량, 포장일자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전국농협에 집산표준작업 및 집산장설립요원을 위촉하여 각 공동수송기구가 같은 규격하에서 일치된 작업을 하게 한다.

나. 분급포장 간요규격내용

품질등급은 형상, 색택, 표피광활, 열흔, 병충해 등에 따라 특급, 우급, 양급 등으로 구분한다.

대소표준은 중량 또는 크기에 따라 대, 중, 소, 또는 대소로 구분하되 구분하지 않는 품목도 있다.

포장규격은 용기의 종류(대나무상자, 나무상자, 종이상자)에 따라 분류하며 용량, 형식, 편호에 따라 용기규격을 표시하고 있다.

포장방법 및 처리요령은 품목별로 완충별 쌓는 방법 등을 표시하고 있다.

다. 미국

미국의 농산물 등급제도는 농업의 상품화와 식품유통제도의 성장으로 발전되었으며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어떤 품목은 거래집단에 의하여 또는 연방 및 주정부에 의해 발전되었다.

1) 농산물표준화시책의 특징

농산물에 대한 연방정부의 표준은 위탁표준, 허가표준, 및 임시표준이 있다.

농무성의 농산물유통국은 주정부와의 협력하에 대부분의 농산물과 식품에 대해 임의 등급 규격화를 제공하고 일정류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미농무성은 농산물 등급규격이 보다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로 하여금 현행 등급, 규격화제도를 계속적으로 검토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수정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 400개 품목 중 7% 정도가 매년 수정되고 있다.

라. EU

EU의 농산물표준규격화제도는 불란서가 EU제국 중에서도 가장 역사가 깊은 나라이다. 프랑스 농산물표준화제도는 EEC, OECD, FAO 등 다양한 국제표준을 적용하고 있으면서 국내표준을 설정 병용하고 있다.

1) 등급화 시책의 특징

품질과 규격에 관한 기준이 생산유통과정에 철저히 시행된다.

청과물의 위생검사는 정부가, 품질검사는 농협 등 민간단

체가 실시한다.

품질표준의 기본사항은 EU규정으로 정하고 각국별로 정하는 시행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불합격품은 도매시장상장을 금지하며 품질규격 등을 이행하지 않을 때엔 통제한다.

선별, 포장, 수송은 철저히 규제하며 조합 또는 개인이 자동선별·포장시설을 산지시장 또는 농가에 설치하여 출하전에 품질규격기준에 의하여 출하자가 미리 선별하거나 출하후 시장 내에서 선별포장한다.

포장용기의 재질은 나무상자, 플라스틱, 스티로폼, 종이상자, 나이론망, 대 등을 사용하며 포장용기의 활용을 위해 회수품을 높이고 있다.

2) 청과물 표준화의 내용

OECD에서는 사과, 배를 비롯하여 각종 청과물의 거래규준이 제정되고 있다.

흙이 없고 완전하며 신선하고 탄력이 있을 것

깨끗할 것

표피에는 비정상적인 습기가 없을 것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을 것

수송 및 유통에 적합할 만큼 충분히 숙성되어 있을 것

4. 표준규격화의 설정과 추진방안

가. 표준 규격화 설정

농산물검사소에서 제정 보급하고 있는 표준출하규격은 품목별 등급규격과 크기 구분, 그리고 표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규격은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으로 분류하고 포장규격은 포장단량별 크기규격과 외부 표시사항을 나타내고 있다.

등급규격은 크기 선별기준과 품위기준을 표시하고 있다. 포장규격은 포장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을 표시하고 있으며 등급규격은 품목특성을 고려하고 있다.

채소류 중 대표적인 엽채류인 배추와 열매채소류인 오이, 딸기 그리고 양념채소류인 고추의 표준출하규격을 보면 다음의 <표 6>, <표 7>과 같다.

현재 정부에서 설정한 표준규격화는 크기구분과 품위등급기준으로 제정하여 보급하고 있으나 농가단계에서 실제로 수용하는 비율은 높지 않다. 그 이유는 아직도 주산단지나 선도농가를 제외하면 농가인식이 부족하고 개별농기출하가 많기 때문에 자기상품에 대한 책임져야 하는 인식이 부족하다. 즉,

채소류도 팔릴 수 있는 상품을 생산 출하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 따라서 품질개선이나 상품성제고를 위한 경영감각이 필요하다.

나. 표준규격화의 문제점

채소류의 표준규격화는 유통능률을 높이고 공정거래를 유도하는데 중요하지만 실제 시행상에는 문제점이 많다.

특히 농가단위에서 표준규격화 출하비율이 낮기 때문에 결국 도매단계나 소매단계에서도 부진한 실정이다.

첫째, 표준규격화의 한계설정문제이다. 등급화에 대한 기준 설정이 세분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생산규모가 적은 경우는 실효성이 적다. 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크기 기준이나 품위등급 기준이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 있어 관행적인 규격에 비해 실효성이 적고 이상적이다. 등급기준은 생산자, 소비자, 상인들이 공통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상식적인 기준에

서 설정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채소류 표준규격 중 품위등급은 지나치게 이상적이며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관행적인 표준규격이 채택되고 있다.

둘째, 표준규격화 여건이 미흡하다. 생산자의 규격출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산지에서 노동력 부족으로 선별작업이 부진하며 공동선별, 공동포장, 공동계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특정 주산지나 선도농가를 제외하면 제한되고 있다.

시장에서도 표준규격출하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고 일부 유사시장은 오히려 산물출하를 장려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표준규격화에 따른 출하비용이 증가되고 있으나 거래과정에서 높은 가격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 엄격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채소류 생산농가의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공동출하가 미흡하다. 일부 기업적인 생산농가나 공동출하가 잘 되는 작

표 6. 배추(결구)의 표준출하규격

-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 통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상 크기가 다른 것의 혼입이 없는 것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상 크기가 다른 것의 혼입이 거의 없는 것	특, 상에 미달하는 것
형상, 선택	품종 고유의 모양이 균일하고 선택이 뛰어난 것	품종 고유의 모양을 갖추고 선택이 양호한 것	
결 구	개열되지 아니하고 결구 상태가 양호한 것	개열되지 아니하고 결구 상태가 보통인 것	
경화정도	노화에 의해 잎이 억세지 아니하고 육질이 부드러운 것	노화에 의해 잎이 억세지 아니하고 육질이 부드러운 것	
신 선 도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싱싱하며 청결한 것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청결한 것	
손 질	겉잎과 오염된 잎을 제거하고 뿌리를 적당히 자른 것	겉잎과 오염된 잎을 제거하고 뿌리를 적당히 자른 것	
중결점구	없는 것	없는 것	없는 것
경결점구	없는 것	거의 없는 것	대체로 없는 것

- 크기 규격

구분/호칭	특대	대	중	소
1개의 무게 (Kg)	4.0이상	3.0~4.0	2.0~3.0	1.0~2.0

※ 1Kg 미만은 "특소"로 표시할 수 있다.

- 표시 사항

품목, 품종명, 산지, 등급, 크기구분(갯수), 생산자 성명, 생산자 주소, 전화번호, 중량, 다만, 품종명은 생략할 수 있다.

자료 : 국립농산물검사소.

표 7. 오이의 표준출하규격

- 등급 규격

구분/호칭	특	상	보 통
날개의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상 크기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상 크기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상 크기가 다른 것이 섞인 것
형 상	품종고유의 모양을 갖추고, 처음과 끝의 굵기가 일정하며 구부러진 정도가 1.5cm 이내인 것	품종고유의 모양을 갖추고 처음과 끝의 굵기가 대체로 일정하며 구부러진 정도가 3cm 이내인 것	구부러진 정도가 4cm 이내인 것
색 태 육 질	품종고유의 색택이 뛰어난 것 육질이 치밀하고 단단하면서 저작감이 뛰어나게 부드러운 것	품종고유의 색택이 양호한 것 육질이 치밀하고 단단하면서 저작감이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생육정도	적당한 것	적당한 것	
맛	담백하고 신선한 맛이 뛰어나며 쓴 맛이 없는 것	담백하고 신선한 맛이 양호하며 쓴맛이 없는 것	
신 선 도	꼭지가 마르지 않고 신선하며 표면의 가시가 떨어지지 않은 것	꼭지가 마르지 않고 신선하며 표면의 가시가 떨어지지 않은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중결점과	없는 것	없는 것	거의 없는 것
경결점과	없는 것	거의 없는 것	대체로 없는 것

- 크기 규격

1 과 의 길 이 (cm)	구분/호칭	특대	대	중	소
	1장과형	33이상	29~33	25~29	20~25
단과형	25 이상	22~25	19~22	15~19	

목반, 단위조합을 제외하면 생산규모가 영세하여 출하단위가 규모화 하지 못하여 상품성 제고에 관심이 적다.

1회 출하규모가 영세하면 선별, 등급화가 실제로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농가단위로 표준규격화 할 경우 주관적 판단에 따르고 있다.

넷째, 산지의 유통시설과 노동력 부족문제이다. 최근 정부에 의한 청과물 종합유통시설이 늘어나고 있으나 출하량에 비해 부족하고 기능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청과물 종합유통시설도 과실류 위주로 설치되어 있으며 채소류는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은 선별, 포장, 등급화를 저해하고 있으며 노동력 투입에 따른 비용을 더 받는 가격으로 보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표준규격출하가 강제되지 않고 권장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표준규격출하를 권장하고 있으며 유통시설에 대한 투자도 확산되고 있으나 수용하는 농가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출하자에게 권장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으

며 관행거래방식이 이를 대체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표준규격화에 대한 정부지원도 포장재비용 보조와 규격출하 선도금 용자제도가 있으나 실제 사업비의 60%를 자체 부담하기 때문에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다. 표준 규격화 촉진방안

채소류의 표준규격화방안은 종합적이면서 단계적 표준등급화 설정, 포장규격 등 농협을 중심으로 꾸준히 추진되면서 농가나 도매거래단계에서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채소류의 표준규격화는 상품적 특성과 생산규모의 영세성 때문에 부진한 실정이다.

채소류 중 열매채소류는 상당히 진전되고 있으나 엽채류는 특히 부진한 실정이다. 일부 선도농가나 우수조직, 즉 작목반이나 단위조합에서 공동선별, 공동포장, 공동계산 등 공동출하방식이 늘어나면서 표준규격화는 점차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채소류 표준규격화를 일반화 하려면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시책개발과 공동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표준규격화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표준규격화가 개별농가에 의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지원과 시책개발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표준규격화에 따르는 비용을 60% 정부담 해야 하는 수준으로 축진할 수 없을 것이다.

표준규격화사업이 권장사업이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정부지원과 투자가 경제적 유인이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특히 청과물 포장센터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산지포장기지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공동판매방식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소농체제 하에서 생산과 출하과정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개별 영농활동이 아닌 협동생산, 공동판매방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공동판매는 개별농가의 영농활동을 집단에 의해 그 힘을 확대하는 것이다. 즉 둘이 합하면 둘 이상의 힘을 발산한다는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를 내자는 것이다. 산업심리학에서 각광받는 이 원리는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비를 줄이는 최적방법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노무관리나 노동운동에도 확산되고 있다.

채소류 출하과정에서 공동출하방식은 단계에 따라 다르지만 공동선별, 공동포장, 공동수송, 공동계산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개별농가의 장점들이 공동의사에 의해 더욱 강하게 나타나서 공동판매의 장점을 얻게 된다.

소농생산체제 하에서 공동판매는 판매과정에서 거래교섭력을 높일 수 있어 제값을 받게 된다. 예컨대 출하채소류를 공동선과하면 상품성은 높아지고 출하자 스스로 자기 통제로서 균일한 생산물을 출하하게 된다. 공동선과는 작목반, 협동출하반, 영농조합법인, 지역 주산지, 농협 등에 의해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다.

공동수송은 출하 채소류를 수송과정에 공동화 하는 방법으로 수송비를 줄이고 수송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 출하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되며 수송효율을 높이게 된다.

공동포장은 포장자재구입과 포장방법을 공동화 함으로써 포장규격 통일과 일관작업을 통해 표준규격화를 촉진시키고 신뢰도를 높이며 상표, 출하자 표시 등으로 얼굴 있는 채소류를 출하하게 된다.

공동계산제(Pooling)는 출하되는 청과물이 선별, 포장, 저장 등 모든 작업의 공동화와 판매도 공동명의로 하며 판매대

금을 정산할 때 판매총액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출하 농가별로 등급별 물량과 등급별 평균 판매가격에 따라 공동계산하는 방식이다.

공동계산제는 위험분산, 출하조정, 시장교섭력 제고, 규모화에 따른 비용절감, 시설가동율제고 등 장점이 있어 최근 포장센터를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공동계산제는 생산자의 익명성, 생산물의 혼합성, 상품화 작업의 공동성, 등급별 수취가격의 평균성 등 특징이 있기 때문에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표준규격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현재 공동계산제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역은 춘천 신북농협의 토마토 작목반, 고양군 신도농협의 용두 파리 풋고추 작목반, 평창 도암의 당근 작목반, 보은 속리산 증판 고추 작목반, 광양 목성 오이 작목반, 함양 양파 작목반, 구례 토지 오이 작목반, 제주 구좌 당근 작목반 등 전국에 확산되고 있다.

이들 공동계산제 실시 우수사례는 소수 농가에 의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공동선별, 공동포장한 후 작목반 명의로 일괄 출하되고 정산방식은 작목반 명의 통장으로 일괄 정산한 후 일정기간 농가별로 정산하고 있다. 처음 어려운 과정도 있었으나 시행착오 후 시행되고 있다.

성공한 작목반의 사례에서 공통적인 공동계산제 방법은 작목반단위 대상조직화, 대상농민의 협의, 샘플에 의한 등급 구분, 선도자금지원, 정산과정을 거치며 수많은 협의와 시행착오를 거쳐 추진되었던 것이다.

셋째, 생산자 조직의 활성화이다. 채소 생산자 조직은 작목반, 협동출하반, 채소회, 단위조합 등 다양하나 그 기능은 협동생산을 주로 하고 있다. 생산자 조직이 적극적으로 출하와 관련한 각종 판매계약, 생산관리, 자재공급 등 조직원이 공통욕구를 충족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한 공통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생동하는 조직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넷째, 포장센터를 표준규격화의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 정부가 지원하여 건설했거나 건설중인 포장센터가 지역 채소류의 공동집하, 공동선별, 공동포장, 공동계산의 전진 기지로 육성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표준규격화를 현실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 현재 제정, 보급되고 있는 채소류 표준규격화는 이상적이고 현실에 적합하지 않는 것이 많기 때문에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표준규격화는 생산자, 상인, 소비자가 상식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공통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 관행거래방법을 보완하고 새로운 규격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완충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도매시장단계에서 표준규격화를 촉진해야 한다. 도매시장에서 출하자에 대한 인식을 주지시키고 공영도매시장에서 비규격출하품의 규제, 판매시 우대조치, 주산지별 순회교육 등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98년 전국 공영 도매시장이 건설되면 규격출하 채소류만 입하 상장하게 하여야 한다.

일곱째, 제도적 개선과 지도 홍보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농안법상 유통기관이 표준규격화에 대한 역할 분담, 출하농산물에 대한 자체 검사의 제도화, 유통교육원의 교육기능강화, 단위조합의 산지기능 의무화를 제도화 한다. 표준규격화에 대한 교육 홍보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III. 결 론

채소류의 표준 규격화는 그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관행거래방법이 개선되고 있다. 영농형태가 상업농화 되면서 표준규격화도 점차 정착되고 있으나 개선 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표준규격화는 규격화의 한계설정, 규격화 여건 미흡, 생산규모의 영세성과 출하규모의 영세성, 산지 유통시설 미흡과 노동력 부족, 표준규격화에 대한 인식부족 등 문제점이 많다.

채소류의 표준규격화는 생산자, 소비자, 상인에게 공통의 경제적 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 보급과 단계적 시책개발이 필요하다. 유통과정에서 유통능률을 높이고 공정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해 채소류 표준규격화는 시급하다.

현재 채소류의 표준규격화는 열매채소류는 상당한 정도로 발전되고 있으나 잎채소류는 관행거래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다. 농가에서 표준규격화가 지켜질 때 도매나 소매 단계에서 점차 확산될 수 있어 농가단계가 중요하다.

채소류의 표준규격화는 정부 규격을 보급하고 있으나 시행상에 현실성이 적고 시책개발도 미흡하다. 보다 적극적으로 표준규격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에 의한 표준규격화의 여건 조성, 공동판매방식의 적극 추진, 생산자 조직의 활성화, 포장센터의 기능 정착, 현실성 있는 표준규격화의 제정, 도매시장에서의 적극 추진 그리고 제도적 개선과 교육 홍보기능이 강화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립농산물검사소 : 농산물 표준출하규격, 1996.
2. 군마현 : 「군마현 청과물 표준출하규격집」, 1983.
3. 권원달 : 「농산물 표준등급화 설정에 관한 조사 연구」, 농어촌개발공사, 1985.
4. — : 「농산물 유통론」, 선진문화사, 1996.
5. 농어촌개발공사 : 「일본 농림물자표준규격제도」, 1983.
6. 농협중앙회 : 「농산물 표준출하규격집」, 1980.
7. — : 「농산물 포장 및 거래단위에 관한 조사연구」, 1982.
8. — : 「표준출하규격제정대상 농산물의 유통실태 및 등급규격조사집」, 1992.
9. — : 「농산물 표준출하규격집」, 1982, 1991.
10. — : '96 농산물 공동선별 및 포장개선 지도위원평가회, 1996.
11. 대북시정부 : 「주요채소분급표장간요규격」, 1980.
12. 전창곤 : 청과물 유통체계분석, 1996. 고려대학교 대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산물 포장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1995.
13. 한국디자인포장센터 : 해외 농산물 유통 및 포장실태조사 보고서, 1988.
14. 농림수산식품유통국 : 「야채의 표준규격」, 일본농림수산성, 1983.